

재 판 서 경 정 신 청

20○○고단 ○○○호 피고인 ○○○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이 20○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.

신 청 취 지

○○지방법원이 20○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"○○○"을 "◎◎◎"로(으로) 경정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신청인은 20〇〇고단 〇〇〇호 사기 사건으로 귀원에서 20〇〇. 〇. 〇.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"〇〇〇"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관계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명이 "〇〇〇"이 아닌 "◎◎◎"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판결문등본 1통

1. 공소장부본사본 1통

1. 주민등록표등본 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위 신청인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			orkul
제출법원	판결 법원 ***		
신청권자	· 법원 · 당사자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규칙 25조
불복절차	·즉시항고(형사소송규칙 25조3항)		
및 기간	・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내(형사소송법 405조)		
사 유	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		